

규약 변경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대출채권)

2. 변경 사항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 40 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프랭클린 사모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대출채권)</p>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 40 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삭제)</p>	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(프랭클린 사모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 (대출채권)) 삭제

3. 효력 발생일

2017년 5월 17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